



# 가스차단장치 설치관련 업무처리

## 관련규정

- 관련근거 : 도법 시행규칙 별표6 제8호가목(13)
- 내용 : 다음의 경우에 가스차단장치 설치
  - 고압 또는 중압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전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
  -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관경 65mm를 초과하는 것(다만,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·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)
  - 지하실·지하도 그밖의 지하에 가스가 채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 및 지하실 등에서 분기되는 배관

## 배경

- 일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차단장치를 수용가 토지내에 설치토록 함으로서 차단장치 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보도(01. 7. 7.(토) KBS 9시뉴스)

- 산업자원부에서 동 보도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(01. 7. 12~8. 15) 후 개선방안 및 향후조치계획이 시달(가스57253-436호, 2001. 10. 23)됨에 따라, 기술검토·시공감리·완성거마 시의 업무처리방법을 정하고자 함.

## 설치위치 및 비용

- 설치위치
  - 가스차단장치는 공급관의 부속물로서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로 공도(公道)상에 설치
  - 공도상에 설치·유지·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만 한하여 공급시설의 설치 용이성 확보를 위해 \*예외적으로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의 경계선에 가까운 곳에 설치토록 허용
- 비용부담
  - 가스공급시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의 “도시가스공급규정”에 의거 비용부담의 주체를 결정
  - 다만, 주택용의 경우 인입공급관의 설치비용은 도시가스회사가 최소 50%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(산자부 지침 “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”, '01. 1. 1 시행)

-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됨.(주택건설촉진법 제26조)

### 검토결과 요약

- 가스차단장치가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로써 설치·유지·관리되어야 함
- 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는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은 시·도가 승인한 도시가스 “공급규정”상 인입공급관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.
  - 주택용의 경우 2001. 1. 1. 부터 최소 50%를 도시가스회사가 부담(10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액 도시가스회사 부담)

### 추진방향

- 차단밸브 설치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公道(公道)상에 설치토록 엄격히 적용하고
-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시설에 차단밸브 설치시에는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“협약”된 경우만 적합한 것으로 처리

### 업무처리 방법

- 기술검토

- 도로의 분기점에서 사용자에게 이르는 인입배관에 설치여부 확인

\* 사용자부지 내에 차단밸브가 설치된(또는 설치될 예정인) 경우

▷ 공급자는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“협약(사유 포함)” 되었음을 기술검토서류 시공내역서 비교란에 명기

예) 차단장치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자부지 내에 설치된(되는) 차단장치로 갈음키로 사용자와 협의하였음

▷ 안정공사는 기술검토시 기술검토내역서의 해당항목 비교란에 “협약(사유 포함)”된 내용을 명기

예) 사용자부지 내 설치된(되는) 차단장치를 사용하기로 협의됨(설치공간 협소)

• 시공감리

- 기술검토 내역에 따라 설치되는지 확인하되, 설치위치 부적정 또는 공사중 지장물 등으로 부득이 차단밸브를 사용자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별도 “협약”된 경우에만 인정(“협약서”를 확인)

### 행정사항

- 본 업무처리방법은 2002. 1. 1. 이후 기술검토, 시공감리, 검사 신청이 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.
-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차단장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, 공급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본 처리 방법보다 우선한다.
-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 등 간담회시 본 처리 방법 및 취지를 전파(지역본부, 지사)